

1992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보고서

1992. 12. 16
예산결산심사특별위원회

1. 심사경과

- 가. 제출자 : 달서구청장
- 나. 제출일자 : 92. 12. 14
- 다. 회부일자 : 92. 12. 14
- 라. 상정일자 : 92. 12. 15

2. 92년도 추가경정예산안 내역

가. 일반회계 (제2회 추가경정예산안)

○ 세 입

(단위 : 천원)

구 분	회 부 예 산 액	비 고
계	1,350,000	
지 방 세	△258,914	
세 외 수입	195,862	
보 조 금	1,413,052	

○ 세 출

(단위 : 천원)

구	분	회부예산액	비 고
	계	1,350,000	
의	회 비	20,967	
일	반 행정 비	△556,456	
사	회 복지 비	△503,201	
산	업 경제 비	△27,323	
지	역 개발 비	1,233,402	
문	화 체육 비	△38,738	
민	방 위 비	11,872	
지	원 및 기타 경비	1,209,477	

나. 특별회계

1) 의료보호 기금(제2회 추가경정예산안)

(단위 : 천원)

세	입
계	30,026
전년도이월금	150,143
용자금회수수입	1,229
잡 수 입	783
과년도수입	7,871
시비보조금	△30,000
국고보조금	△100,000

세	출
계	30,026
기금운영비	△1,000
의료보호대상자 진 료 비	△113,076
대불금 및 국고 보조금반환금	144,102

2) 영세민 생활안정 기금(제1회 추가경정예산안)

(단위 : 천원)

세	입
계	△7,172
순세계잉여금	△7,172

세	출
계	△7,172
영세민 전세자금 융 자지원 이차 보전금	△7,172

3.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

기정 예산액보다 3% 증가하여 총 예산규모는 4백 6십 5억 3천 7백만원으로 일반회계는 3.1%인 4백 4십 3억 5천만원이며 특별회계는 1%가 증가된 2십 1억 8천 7백만원이다.

여기에서 의료보호기금은 1.6%가 증가된 1십 8억 5천 8백만원 새마을소득 특별자원사업비는 증감이 없이 1억원이며 영세민생활안정기금은 기정액에 3%가 감소된 2억 2천 8백만원임.

그리고 세입은 일반회계의 지방세가 기정액보다 2.5% 감소된 9십 8억 3천만원이며 세외수입은 1.6%가 증가된 1백 1십 8억 2천 8백만원, 보조금은 9십 7억 3천 9백만원으로 편성되었음.

세출 내용은 인건비가 3.9%가 감소되어 9십 7억 2천 9백만원이며 관서운영비는 2.7%인 9천 7백만원이 감소된 3십 4억 7천 9백만원, 기본경상비는 4.6%인 1억 9천 9백만원이 감소된 4십억 7천 2백만원임.

그리고 경상사업비는 5.7% 감소된 5십 1억 8천 9백만원 주요사업비는 1십 1억 5천 3백만원이 증가된 1백 9십 6억 1천 3백만원이고 기타경비는 1십 2억 9백만원이 증가하여 2십 2억 6천 7백만원으로 편성됨.

따라서 일반회계의 주요사업비 및 기타 경비에 대하여는 심도있는 심의가 있어야 될 것으로 생각됨.

4. 심사결과

가. 세입

세입예산 13억 5천만원은 지방세가 98억 3,008만 6천원, 세외수입 118억 2,741만 8천원, 보조금 97억 3,949만 6천원으로 편성되어 당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건전 재정 운영을 위한 자원 확보를 위해 세입 예산이 계상되었다고 사료되었으므로 원안대로 가결하였음.

나. 세출

- 세출 예산부분은 기본 경상비의 상승에 따른 필수경비의 계상, 주요 추진 사업의 마무리등 세입예산 확보에 따른 적정 편성으로 사료되어 원안대로 가결 하였음.
- 특별회계 부분은 의료보호기금에서 대불금 및 국고 보조금 잔액 반환금 1억 4,410만 2천과 영세민생활안정기금의 영세민전세자금융자지원 이차 보전금에 717만 2천원의 감액 편성으로 원안대로 가결하였음.

다. 반대 : 없음